

오만, 식품(수입식품 포함)의 사전 등록 의무화 (2025년 1월 1일 시행)



오만 농수산자원부 장관, 식품 사전 등록 의무화 및 홍보에 관한 장관 결정명령 발표

2024년 4월 21일, 오만 농수산자원부는 오만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품질센터(FSQC, 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)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장관 결정명령「69/2024」를 발표함. 이번 명령은 오만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록 및 광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, 수입식품도 해당되므로 한국 수출 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유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

1. 배경 : 신규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(수입 제품 및 현지 생산 제품)은 오만 농수산자원부 산하 [식품안전품질센터](#)에 사전 등록이 필요함. 이를 통해 식품 추적, 수입 및 수출 절차 간소화, 생산 및 무역 관행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. 기 등록된 식품 중 라벨 또는 제품 성분의 변경된 경우에도 재 등록이 필요함

2. 주요 내용

1) 사전 등록 필요 식품

① 수입식품

② 현지에서 제조, 생산, 포장된 식품

③ 기 등록된 식품 중 설명데이터카드(Explanatory Data Card), 자체 성분, 영양성분표에 변동이 있는 식품

※ 단,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수입식품,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 목적 수행 샘플, 소비자에게 배포되는 무료 샘플, 적합성 검사 목적 샘플, 레스토랑에서 조리한 음식, 기타 상공투자진흥부 및 보건부와 협의하여 장관이 결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

2) 식품 등록 및 설명데이터카드 승인 요건

- 식품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, 현지 및 오만 식품 표준 사양, 수출국과 체결한 유효한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여 생산된 식품이어야 함
- 상공투자진흥부에 등록 및 인증된 식품 시설에서 제조해야 함
- 오만 수출 및 반입이 금지된 제품 공급처의 제품이 아니어야 함
- 식품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가 승인된 표준 사양을 준수해야 함
- 동물성 식품은 오만으로 수출이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

3) 식품 등록 시 제출 서류 및 준수 요건

① 제품 정보 서류

필수 기재 사항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명 • 원산지, 수출국 및 포장국 • 포장 유형 • 무게, 순중량, 부피 • 상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조 업체의 이름 및 주소 • 식품 거래자의 상호명 • 관세율 조항(HS 코드) • 설명데이터 카드의 바코드 번호(있는 경우) • 제품의 최종 이미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 섭취 관련 경고 및 주의 사항 • 원재료 • 유통기간 • 보관 조건 • 양식에서 지정한 그 외 정보

② 설명데이터카드 원본 또는 사본

- 설명데이터카드는 제품명, 성분 목록(내림차순),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경고, 첨가물 및 기능, 영양 성분 데이터, 제조자 또는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, 아랍어 또는 영어로 된 원산지, 유통기한, 사용 방법 기재 필요

③ 준수 요건

준수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명데이터카드는 오만 또는 걸프 표준(GSO,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)* 을 준수해야 함 • 설명데이터카드는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하며, 아랍어 외 영어 또는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음 •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문구, 로고, 기호 기재 금지 • 영양 또는 건강 관련 주장이 있는 경우, 영양 성분에 관련된 문구, 로고,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안전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 제출 필요 • 오만 법률에 의해 금지된 이름, 기호, 마크, 이미지 사용 금지 • 식품안전품질센터에서 공인한 실험실에서 발급한 영양성분검사서 필요(단,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) • 승인된 설명데이터카드는 식품 원료, 정보, 성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표준 사양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함

* 오만은 바레인, 쿠웨이트, 카타르,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(GCC) 회원국으로 식품 표준을 통합하여 GSO인증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만 유통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

4) 식품 홍보 규정

- 광고 또는 홍보할 식품은 **식품안전품질센터에 등록**되어야 함
- 광고 또는 홍보 내용에 정치, 종교에 대한 언급이나 공공질서 및 도덕에 저해되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
- 허용되지 않은 영양학적 주장,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식품안전품질센터에서 승인하지 않은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
- 어린이 대상 광고 또는 홍보에는 건강에 해로운 관행을 묘사해서는 안됨
- 돼지고기, 알코올 또는 그 파생물이 포함된 제품은 광고 또는 홍보 금지
- 규정 위반 시마다 **1,000리알(약 한화 359만원)의 벌금이 부과**되며, **상습 위반자에게는 2배의 벌금 부과**
-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**최대 14일 이내 승인 여부 검토**(14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거부로 간주됨)

3. 시행일 : 2025년 1월 1일 시행

▶ 오만 식품안전품질센터(FSQC, 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) [바로가기](#)

출처

The Arabian Stories, New regulations for registering, promoting foodstuff in Oman, 2024.04.28

قرار وزاري رقم 2024/69 بإصدار لائحة تسجيل المائدة الغذائية والإعلان أو الترويج عنها mjla.gov.om